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그 추종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국군, 공무원, 양민 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공산폭동이고 반란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수립에는 52,350여 명이나 투표로 참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앞장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계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4·3은 공산폭동이자 반란일 뿐이지 봉기와 항쟁같이 민주화 운동처럼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4·3 공산폭동과 반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원과 그 추종세력을 소탕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의 진압행위는 국가폭력과 학살이 될 수 없으며, 오늘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게 한 정당행위였다.

4·3수형인들은 대한민국에 항적하는데 관여된 과거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 4·3은 대한민국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첫째, 개정안 제2조 정의 규정은 제주4·3공산폭동과 내란을 일으킨 가해자 남로당을 명시하지 않고 소요사태, 무력충돌 같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여 봉기, 항쟁 등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시키고, 정당한 진압행위는 국가폭력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둘째, 개정안 제2조 희생자에 폭동과 내란에 가담했던 수형자를 포함시키고, 희생자 심사기준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거짓 희생자에게 보상금 환수 규정도 없어 위헌이다.

셋째, 개정안 제14조는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여 공산폭동 반란으로 처벌되었던 수형자들에게 국민혈세로 배보상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건국을 방해한 사건을 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위반한다. 부당한 형세 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4·3수형인들에 대한 지나친 특권 부여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국회가 만일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저버리고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민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란에 가담한 4·3 수형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지방법원은 정의 앞에 사죄하라!

4·3의 역사왜곡을 방조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국회의원, 법무부, 판사들은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국민은 국회, 법원, 법무부에 의한 헌법질서 농단, 법치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제주4·3사건을 왜곡하여 망언한 문재인 대통령과 위법 재판에 불복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은 형사고발하였고, 제주4·3사건 관련 심사무효, 위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폭정중식비상시국연대/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미래대한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법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착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37-04-006592 (예금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문의 : 02-6951-0285, 02-737-0717